

예산총칙

제1조 :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14,297,504	9,428,925
1. 일반회계	300,115,428	9,003,463
2. 특별회계	14,182,076	425,462
의료보호기금	902,502	27,075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608,059	18,242
주차장	10,847,363	325,421
주거환경개선사업	172,640	5,17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65,241	19,957
기반시설사업	89,818	2,695
지하수관리	285,766	8,573
재정비축진	610,687	18,321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8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93,97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